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2005. 12

나 성 린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본 연구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조세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진 조세전문학자들에게 세목별로 세제개혁의 사례들을 서베이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기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소비세제 분야에 관한 것이다.

소비세는 소득세와 더불어 세수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세목이다. 그러나 그 대상 품목이 워낙 다양하기에 품목별 세율 책정의 문제가 항상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그리고 그 역진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를 중심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일세율 체계인 부가가치세 제도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1977년에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였다. 그 목적은 세수 증대, 소비세 체계의 단순화, 세제의 효율성 제고, 탈세 완화 등이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도 그 세율체계와 개별소비세의 존치 등에서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비세제 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세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소비세수 비중이 30% 후반으로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여타 후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대체로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소비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율 제도, 특별소비

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소비세제의 개혁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익이 없는 세율의 적정성 문제보다는 세제의 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교통세와 각종 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는 환경관련 조세를 환경세로 단일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회복지비 지출 증대, 국가부채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세수의 증대가 어려운 상황에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나성린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초고에 대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한국조세연구원의 권오성 박사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5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시점>

우리 경제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조세제도도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조세 중 소비세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세 제도의 개혁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비세 제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을 소비세 체계, 세율 및 그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그리고 그동안 단행되어 온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외국의 소비세제 개혁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비세제 개혁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도입한 1977년의 대폭적인 소비세제 간소화를 제외하고는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대변화가 없었다. 대부분이 기존의 세제 내에서 세율이나 감면의 조정 등이 있어왔을 뿐이다. 첫 번째 개혁이었던 1977년 소비세제 개혁의 주요 목표는 소비세 체계의 간소화와 더불어 세수증대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이전의 일반소비세인 영업세와 개별소비세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의 복잡한 세목 체계를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로 간소화한 것이다. 이러한 간소화 목표는 영업세가 단일세율 부가가치세로 개편되고 기타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를 주축으로 통합·단순화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증대 목표의 달성은 불분명하다. 1977년을 기점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영업세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개별소비세수는 197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일반소비세와 개별세수를 합한 전체 소비세수는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별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세수 비중의 감소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두 번째 소비세제의 개혁은 부가가치세제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해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가 과세근거를 없애 탈세의 요인이 되었고 이것이 사업소득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수평적 불공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과세특례 기준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에 과세부담의 지나친 불공평성이 초래되어 또 다른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과세특례제도 기준 차상위 계층의 불만을 완화하고 탈세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개편해 왔다.

세 번째 소비세 제도의 개혁은 에너지세 개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세는 교통세(휘발유, 경유)와 특소세(LPG, LNG, 등유, 중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유류의 가격 격차는 생산원가보다는 부과되는 에너지세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는 환경오염 수준 같은 확실한 기준보다는 유류의 사용계층에 대한 고려와 같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큰 폭의 차이로 과세되어 왔기에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환경오염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2000년 말에 이러한 에너지세를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세 개편은 기존의 유류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결정을 하였던 소비자(경유 자동차)와 사업자(LPG택시) 등에게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세 개편은 많은 저항을 불러와서 정부는 여러 가지 경과조치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세제 개혁의 주요한 이슈는 소비세제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도입한 특별소비세제의 문제였다. 특소세는 1977년 8종에 이르던 복잡한 소비세 제도를 통합하여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주로 고급 가전제품, 에어컨, 골프용품, 보석류와 같은 사치품에 대해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엔 우리와 달리 복수의 세율을 사용하여 사치품에 대해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재분배 목적 외에 승용차와 유류와 같이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제품에 대해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그동안 특소세는 여러 차례 개편과정을 거쳐왔다. 주된 이유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와 같이 필수품화된 품목에 대해 더 이상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소비진작을 위해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가장 최

근의 2004년 8월의 특별소비세 개편은 대상 품목 32개 중 24개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의 두가지 이유 외에 차제에 특소세를 형평성 증진 목적보다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의 치유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전환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이러한 이유가 합리화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1977년 도입 당시 63개 품목 6개 장소에 이르던 특소세 과세대상이 이번 개편 직전까지 32개 품목 6개 장소로 줄어들었고 세율도 최고 100%에 이르던 것이 14%까지 인하되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그동안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특소세율을 내릴 때마다 장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도 없이 세수만 줄이고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을 익히 알기에 정부도 특소세 폐지 24개 품목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프로젝션 티브이나 에어컨처럼 세수는 적으면서 과도한 행정비용과 관련 기업의 부담만 초래하기 때문에, 또는 보석이나 고급모피처럼 세수는 적으면서 밀수나 무자료 거래를 성행시켜 정상적 영업을 하는 업체에게 불공평을 안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선정된 24개 품목으로부터의 세수는 2003년의 경우 4천억원 정도로 전체 특소세 세수 4.8조원의 8%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고급 티브이, 요트, 고급모피 등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데 대해 일반서민들은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가 소비세제의 효율성 증대에 분명히 기여하겠지만 세부담 역진성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에 중산서민층을 위한 정부

지출 증대와 재산과세의 강화 등을 통해 특소세의 용도 전환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유럽 국가들이 1967년부터 1973년 사이에 기존의 개별 판매세(selective sales tax)와 구매세(purchase tax)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한 것은 소득세제 단순화와 더불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세제개혁의 하나였다. 이 당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자원배분에 있어 중립적이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 세가 모든 상품에 단일세율로 부과되면 용역을 포함한 모든 상품간에 중립적이다. 그리고 수직적 통합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중립적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기에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중간재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상호대사가 가능하기에 탈세가 어렵다. 다섯째, EU 통합과정에서 조세제도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 EU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도 앞다투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도입 초기 OECD국가들의 VAT 세율은 다수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표준세율을 중심으로 필수품 등엔 저세율을 사치품 등엔 고세율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0세율과 면세율을 적용하였다. OECD국가의 소비세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OECD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수입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개별소비세의 세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소매 거래에 부과되는 세제(retail and

wholesale taxes)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되고 부가가치세율이 점차 증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유럽보다 늦게 일본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가가치세율(5%)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던 조치가 그동안의 경제불황을 초래한 중요한 이유였기에 선불리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상황과 이미 높은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는 어렵기에 일본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두 자리 수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제 앞에서 살펴 본 소비세제의 개혁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소비세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소화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세 제도는 1977년 소비세제 개혁에 의해 대폭 간소화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다. 그 이유는 첫째 불필요하게 세목이 많고, 둘째, 목적세의 남용 때문이고 셋째, 부가세(surtax) 방식의 과세체계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세제가 복잡하게 된 이유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효성 없는 세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국세의 20%에 달하는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 셋째, 우리 조세체계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심지어는 조세감면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를 운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과세구조이다. 따라서 목적세를 폐지하여 본세에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세 세율체계의 개편이다. 세율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이슈는 단일세율이 바람직한가의 여부와 만약에 다수세율이 바람직할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세율을 정하는가 여부

이다. 이미 부가가치세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 개혁을 위해 단일세율 논쟁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 부가가치세율 10%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다양한 소비세제를 운용하고 있고 전체 소비세율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 않기에 소비세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세수의 증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의 다른 주요세목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문제는 부가가치세율의 증가는 소비를 둔화시켜 경기를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고 세 부담 역진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시키는 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로 할 필요가 있고, 세 부담 역진성 문제는 경제활성화로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다른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상품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서민층이 선호하는 상품에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을 고려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에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사치품의 경우

형평성의 관점에선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효율성의 관점에선 낮은 세율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최적조세모형을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세율의 적용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세목들의 조정은 현재로서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 다만 앞으로도 특별소비세는 당분간 외부성의 교정세와 사치품에 대한 고율과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세율의 적용은 개별소비세 이외에 부가가치세의 0세율이나 면세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세율의 채택 여부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탈세완화를 위한 소비세제 개편이다. 현재 소비세 관련 탈세는 거의 대부분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탈세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세특례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세사업자들에 한해서만 현행 납세면제 제도(구 소액부징수제도)를 허용하고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자로 구분되었던 과세특례제도가 1999년부터 간이과세제도로 단순화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간이과세제도마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소비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당분간 부가가치세 중심의 소비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비세 체계를 간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질의 개선을 위해 현재 교통세와 각종 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는 환경관련 조세를 환경세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에너지관련세와 더불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와 삶의 질 개선, 국가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수증대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소득세 증대의 어려움, 재산세 증대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다른 나라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세부담 역진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0세율 제도, 특별소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9
II. 소비세제의 현황	20
1. 소비세의 범위	20
가. 소비세의 정의	20
나. OECD의 소비세 개념	20
다. IMF의 소비세 개념	22
2. 우리나라의 소비세 체계	23
가. 소비세 체계	24
나. 소비세율	25
다. 소비세 변화 추이	26
라.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27
마. 개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	33
3. 소비세 비중	38
가. 우리나라 전체 조세에서 소비세의 위치	38
나. 우리나라 세목별 세수구성비	39
다. 직·간접세 비율	40
라. 소비세 비중의 국제비교	41
III.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혁의 비판적 고찰	45
1. 1977년 소비세제 간소화	45
2.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편	47
3. 에너지세 개편	49

4. 2004년 특별소비세제 개편	50
IV. 외국의 소비세제 개혁 사례	53
1. 부가가치세 개혁	53
2. 일본의 소비세 개혁	56
V. 바람직한 소비세제의 개편방향	58
1. 소비세제의 간소화	58
2. 소비세 세율체계의 개편	59
3. 탈세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개편	61
VI. 결 론	63
<참고문헌>	65

표 차례

<표 II-1> 주요 소비세율	25
<표 II-2> 1977년 소비세체계의 개편	27
<표 II-3> 영업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28
<표 II-4> 특소세 체계(2004년말 기준)	34
<표 II-5> 에너지세 개편	36
<표 II-6> 주세율 변화 추이	37
<표 II-7>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40
<표 II-8> 우리나라의 직·간접세 비율(조세 기준)	41
<표 II-9> 외국의 직·간접세 비율(국세 기준)	41
<표 II-10> OECD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	42
<표 II-11> OECD국가의 GDP대비 소비세 비중	43
<표 III-1> 소비세수의 추이	46
<표 III-2>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개편 추이	47
<표 III-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인원 및 과세표준 추이 ..	48
<표 IV-1> OECD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	54
<표 IV-2> OECD국가의 표준면세 범위	55
<표 IV-3> OECD국가(평균)의 부가가치세 세수입 비중	56
<표 IV-4> OECD국가(평균)의 개별소비세 세수입 비중	56

I. 서 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세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세개혁이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 온 측면이 있다. 세수를 증대시킨다든지 탈세를 방지한다든지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조세제도도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조세제도 개혁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조세 중 소비세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세제도의 개혁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비세제도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은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을 소비세 체계, 세율 및 그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III장은 그동안 단행되어 온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제IV장은 외국의 소비세제 개혁 사례를 분석한다. 제V장은 국내외 소비세제 개혁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제VI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Ⅱ. 소비세제의 현황

1. 소비세의 범위

가. 소비세의 정의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소비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여 효용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비세는 흔히 간접세와 혼용해서 쓰인다. 간접세란 법적 납세의무자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 세부담자에게 전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비세와 간접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를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소비세이지만 직접세인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비세와 간접세는 일치하므로 이 두 조세는 많은 조세통계에서 혼용해서 쓰인다.

나. OECD의 소비세 개념

국제적인 조세통계는 주로 OECD와 IMF에서 작성된다. 먼저 OECD의 소비세 개념을 중심으로 소비세 종류를 정리하기로 한다.

OECD분류에 의하면 소비세는 크게 ‘상품 및 용역의 생산·판매·이전에 관한 조세’와 ‘상품의 사용과 상품 사용 및 행위의 허용에 관한 조세’로 구분된다. 특기할 것은 전자의 조세는 일반

적으로 소비세로 인식되고 있지만 후자의 조세는 소비세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후자의 조세는 일반적으로 상품 가치에 근거해서 과세되지 않고 양에 따라 부과된다. 오염세, 사용료(user charges), 면허세(licence fees)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동물이나 상품의 소유권의 등록도 이에 속한다. 자동차면허세, 낚시 및 사냥 면허료, 어떤 서비스 행위에 대한 세금 등도 이에 속한다.

5000 소비세(taxes on goods and services)

- 5100 상품·용역의 생산·판매·이전에 관한 세(taxes on production, sale and transfer, leasing, and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 5110 일반소비세(general sales taxes)
- 5111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es)
- 5112 판매세(sales tax)
- 5113 기타 일반소비세(other general taxes)
- 5120 개별소비세(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 5121 물품세(excises)
- 5122 전매익세(profits of fiscal monopolies)
- 5123 수입관세(customs/import duties)
- 5124 수출세(on exports)
- 5125 투자재세(on investment goods)
- 5126 개별용역세(on specific services)
- 5127 국제무역과 거래세(other taxes on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actions)
- 5128 기타 개별소비세(other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
- 5200 상품사용세(taxes on use of goods/ on permission to use goods or perform activities)
 - 5210 반복적 상품사용세(recurrent taxes)
 - 5211 자동차세-가구(motor vehicle taxes households)
 - 5212 자동차세-비가구(motor vehicle taxes others)
 - 5213 기타 반복적 상품사용세(other recurrent taxes)
 - 5220 비반복적 상품사용세(non-recurrent taxes)
-

5300 기타소비세(unallocable between 5100 and 5200)

다. IMF의 소비세 개념

IMF 소비세 개념과 OECD 소비세 개념의 주요한 차이는 전자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와 등록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나 후자에 의하면 소비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 5. 재화 및 용역세(taxes on goods & services)
 - 5.1. 일반소비세(general sales, turnover or VAT)
 - 영업세, 부가가치세
 - 5.2. 개별소비세(selective excises on goods)
 - 물품세, 주세, 방위세, 교육세, 직물류세, 유류세, 전기가스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 5.3. 전매익세(profits of fiscal monopoly)
 - 5.4. 개별용역세(selective taxes on specific services)
 - 전화세, 유홍음식세, 여행세, 입장세
 - 5.5. 재산이용영업활동허가세(taxes on the use of goods, property permission to perform activity) 영업허가세, 자동차세, 기타

- 5.6. 기타 재화 및 용역세(others)
 - 6. 국제무역거래세(taxe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 6.1. 수입관세 (import duties)
 - 6.1.1. 관세(customs duties)
관세, 특별관세
 - 6.1.2. 기타수입부과금(other charges)
톤세
 - 6.2. 수출관세(export duties)
 - 6.3. 수출전매이익세(profits of export or import marketing boards)
 - 6.4. 외환거래이익세(exchange profits)
 - 6.5. 외환세(exchange tax)
 - 6.6. 기타 무역거래세(other)
-

2. 우리나라의 소비세 체계

우리나라 소비세는 크게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특정세율로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소비세체계는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획기적으로 단순화되었기에 1977년을 중심으로 소비세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1977년 이전엔 소비세가 일반소비세인 영업세와 개별소비세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1977년부터 영업세는 세율이 단일화되면서 부가가치세로 개편되었고,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 통합되었다.

가. 소비세 체계

국세 소비세

내국세

-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유통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소비세

도세

- 레저세
- 면허세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 지방교육세

시·군세

- 자동차세
 - 도축세
 - 담배소비세
 - 주행세
-

나. 소비세율 (2003년 12월 말 기준)

현행 주요 소비세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03. 12 현재).

<표 II-1> 주요 소비세율

세 목	세 율
부가가치세	10% (0%, 면세)
특별소비세	4~10%
주세	5~100%
인지세	100원~35만원
증권거래세	0.5% (탄력세율 0.15~0.3%)
교통세(목적세)	휘발유 630원/리터, 경유 234원/리터 (탄력세율 30%)
교육세(목적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수송용부탄의 경우 1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이상), 30%(주세율 70% 이하)
농어촌특별세 (목적세)	조세감면액의 20% 저축감면의 10% 특별소비세액의 10% (골프장입장 30%) 증권거래금액의 0.15%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 500만원 초과분의 10~15%
담배소비세	흡연용 제조담배 - 쉐럴 20개비당 510원(200원 이하 40원) - 파이프 담배 50g당 910원 - 엽쉐럴 50g당 2,600원 - 각련 50g당 910원 썩는 제조담배 50g당 1,040원 냄새맡는 제조담배 50g당 650원
주행세	교통세액의 12% (탄력세율 30%)

다. 소비세 변화 추이

1960년 이전: 영업세, 물품세, 청량음료세, 직물세, 주세, 전기 가스세, 유흥음식세, 행세, 입장세, 사업세, 등록세, 인지세, 마권세, 광고세, 음료세, 골패세, 사탕소비세, 특별행위세, 교육세(1958~1961)

1960년대: 전화세, 석유류세, 증권거래세 신설

1970년대: 직물류세 신설

1977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방위세, 인지세

1988년: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하(13%→10%) 및 탄력세율제도 폐지

1989년: 담배소비세 신설

1991년: 교육세 신설, 방위세 폐지

1993년: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의 신설

1994년: 교통세 신설(특별소비세로부터 분리, 독립), 농어촌특별세 신설

1995년: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 폐지 및 간이과세제도 도입

199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표준신고율제도 폐지,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조정, 신용카드가맹 유도), 담배 부가가치세 도입

1999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폐지

2001년: 에너지세 개편, 교육세 시한 연장(2000.12.31. → 2005.12.31) 및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전화세 폐지

2004년: 특별소비세 대폭 폐지 (32개 품목 중 24개 폐지)

<표 11-2> 1977년 소비세체계의 개편

(단위: %, 개)

세 목	개 편 전			개 편 후		
	업종·과세물건수	세율	세율	세 목	업종·과세물건수	세율
영업세	11업종 9품목	0.5~3.5(6)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	2, 3.5, 10
물품세	83종 122품목	2~200(19)		특별소비세	34품목	10~180(13)
직물류세	14종 19품목	10~40(6)				
석유류세	5종 9품목	20~300(3)				
전기가스세	1종	15(1)				
통행세	12종	5~20(3)				
입장세	20종	15~250(17)				
유흥음식세	3종	2.5~15(14)				

주 : ()안은 세율의 갯수임.
 자료 : 유시권(1995)

라.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1) 영업세

영업세는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1949년에 제정되어 2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서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로 대체될 때까지 우리나라 일반소비세의 주요 세목으로 역할을 했다.

영업세법 제정 당시 영업세 과세대상은 31개 업종이었고 세율은 판매금액의 0.7%~5%, 수입금액의 1%~20%이었다. 그리고 개인영업의 경우 판매금액이나, 수입금액, 보상금액, 청부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아 현행 부가가치세의 소액부징수제도와 유사한 특례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3> 영업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영업세법 제정 당시)

(단위 : %)

		과 세 표 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판매업	도매	판매금액	1.5	인쇄업	수입금액		4
	소매	판매금액	2.5	출판업	수입금액		3
은행업	갑	판매금액	4	사진업	수입금액		6
	을	판매금액	5	대석업	수입금액		10
보험업		수입금액	3	여인숙업	수입금액		6
무진업		보험료액	0.7	요리점업	수입금액		1
대금업		무진가금액	1	음식점업	수입금액		8
세물업		수입금액	20	주선·대리중개업	보상금액		18
제조업	갑	수입금액	15	물산객주업	보상금액		15
	을	수입금액	30	신탁업	보상금액		5
전기가스공급업		수입금액	1	환전업	보상금액		3
운송업		수입금액	4	목욕탕업	수입금액		5
운송취급업		보상금액	10	이발미용업	수입금액		7
창고업		수입금액	10	연극홍행업	수입금액		8
철도업		수입금액	2	유기장업	수입금액		8
청부업	갑	청부금액	1.5	유홍소업	수입금액		6
	을	청부금액	4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1997) <표 8-2>

이 영업세는 그후 1961년과 1967년 두 차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1961년 개정은 업종 및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32개 업종을 18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광산세와 어업세를 흡수통합하여 광산업과 수산업을 신설하였으며, 세율도 종래의 17가지에서 6가지(3%~20%)로 통합하였다. 1967년 개정은 종전의 18개 업종을 2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였다(0.3~2%). 그리고 원천징수의 불징수금액을 3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소액부징수한도는 기당 세액이 500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였다.

2) 영업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

영업세는 과세업종이 최종 소매단계가 아닌 업종에 대해서도 과세되므로 하나의 물품이더라도 두 개 이상의 과세업종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중복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의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과세대상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거쳐 판매되더라도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판매가격에서 매입세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비율이 되므로 중복과세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수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세가 되는 반면에 영업세는 수출품의 중간 제조·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세되므로 면세가 어렵다.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부기를 기초로 하는 등 영업세에 비해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도입의 목적은 간접세 체계의 단순화, 근거과세의 확립 및 탈세방지, 수출 촉진,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상대가격 체계의 유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근거과세의 확립 및 탈세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가 가장 큰 목표였다. 부가가치세는 폭넓은 인정과세가 이루어진 영업세와 달리 세금 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상호대사의 기능이 있어 근거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져 탈세방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세수가 급증하였다. 예를 들면 1976년의 영업세수가 2,614억원이었는데 1978년 부가가치세수가 8,352억원에 달해 거의 3.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 또

는 제공과 물품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세율은 13%의 단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3%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율은 도입 당시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0%가 유지되었으며 1988년 탄력세율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지금까지 10%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액은 세액공제법(tax credit method)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의 필요조건으로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또한 영세율과 면세율이라는 면세조항을 두어 특정 부문이나 물품 등에 대해 면세하였다. 수출 등 외화획득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완전면세 또는 영세율제도를 적용하였으며,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과 국민후생 용역 등에 대해서는 일반면세제도를 활용하여 면세해 주었다. 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는 영세율의 경우 매출세액을 면제해줄 뿐 아니라 매입세액까지 공제해 주는 데 반해, 면세율은 매출세액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2%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6개월)당 납부세액이 7,500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를 채택하였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이나 세율 등 기본구조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다만 면세범위의 조정,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범위 조정 등과 같은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다.

-
- 1978.1: 소액부 징수 범위 납부세액 1만원으로 확대.
 - 1978년: 과세특례자의 신고납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 영세율의 범위 소폭조정, 과세특례의 범위를 종전의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
 - 1988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편. 기본세율을 종전의 13%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탄력세율제도를 폐지. 과세특례의 범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
소액부징수제도의 범위도 납부세액 1만원에서 2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
 - 1989년: 소액부징수의 범위를 과세기간당 4만원으로 확대.
 - 1993년: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크게 개편. 소액부징수의 범위를 1과세 기간의 매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업자까지 확대. 연간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산출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었다. (한계세액공제제도는 과세특례자의 과표가 증대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납세액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해주려는 제도)
 - 1994년: 소액부징수의 범위를 1과세 기간의 매출액이 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하고 한계세액공제제도의 산식을 개편.
 - 1995년: 과세특례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액부징수(납무의무만 면제, 등록 및 신고의무는 부여)의 범위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또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10%를 과세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신설.(간이과세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세

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자의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서 납세액을 결정. 총 11개 업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가율 적용: 농·수·임·어업(43%), 제조업(22), 전기가스·수도업(21%), 소매업(13%), 건설업(37%), 음식업(50%), 숙박업(50%), 운수·창고·통신업(50%), 부동산임대업(4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41%), 기타(40%).

1998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조정(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세율(2%)과의 형평 유지를 위해 소매업의 경우 13%에서 20%로 상향조정). 표준신고율제도 폐지. 실업대책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200원 이하, 균경보훈용 담배 제외). (표준신고율제도는 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그러나 이것이 불성실신고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폐지하기로 함)

1999년: 과세특례자 폐지,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간 매출액 1억 5,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대리·중개 등의 별도 기준 폐지.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의 과세형평 실현을 위함). 목적간이과세업종별 부가가치율 11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소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20%), 건설업,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부동산임대업, 농·임·어·수림업, 기타서비스업(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40%)소액부징수제도를 납부면제제도로 용어 수정하고 과세특례자 중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를 간이과세자 중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

마. 개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는 이미 폐지된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유흥음식세, 청량음료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등이 있었고, 1977년 7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가 도입되면서 교통세, 주세, 전화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1)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와 함께 과세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별소비세 세목으로 종전의 복잡다기했던 소비세체계를 단순화하였다. 특별소비세의 도입 목적은 소비세 체계의 간소화 이외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세수확보 기능, 소비억제와 국내유치산업 보호/내수산업 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 국제수지 개선, 경기조절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체계는 도입 당시에는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의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1981년 말 세법개정에 의해 잠정세율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와 같은 세 가지 세율체계가 확립되었다. 기본세율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말하며, 탄력세율이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위해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리고 잠정세율이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

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을 일정 기간별로 인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초 2년간은 기본세율의 10%, 3년째와 4년째는 각각 기본세율의 40%와 70%를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82년 말에 개정하여 기본세율의 10%가 적용되는 시한을 최초의 2년간에서 4년간으로 연장하였다.

특별소비세 도입당시 과세대상으로는 보석, 투전기, 냉장고, 세탁기, TV, 승용자동차, 커피, 코코아, 청량기호음료, 휘발유, 경유, 경마장, 골프장 등 29개 품목이 해당되었다. 이후 이들 과세 품목은 일부가 과세대상에 추가되고 또한 일부의 과세대상은 비과세되는 등 계속 조정되었다.

<표 II-4> 특소세 체계(2004년 말 기준)

과세 품목	세 금 부 담			
	계	특 소 세	교 육 세	농 특 세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5.2%	4%	1.2%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11.2%	8%	3.2%	
등유	177원/리터	154원/리터	23원/리터	
중유	12.7원/리터	11원/리터	1.7원/리터	
LPG부탄	46원/kg	40원/kg	6원/kg	
LPG프로판	382원/kg	382원/kg		
LNG	40원/kg	40원/kg		
부생연료유	129원/kg	112원/kg	17원/kg	
경마장	650원	500원	150원	
경륜장	260원	200원	60원	
카지노	65,000원	50,000원	15,000원	
슬롯머신장	13,000원	10,000원	3,000원	
골프장	19,200원	12,000원	3,600원	3,600원
유흥음식점	13%	10%	3%	

최근의 특소세법 개정 내용을 보면, 1999년 12월에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중심으로 특소세 과세대상을 대폭 정비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63개 과세대상 물품 중 50%를 축소하여 32개 과세대상 물품으로 축소조정하였다.

그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계속 세율을 인하해 오다가 2004년 8월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소세 품목 32개중 24개를 폐지하여 8개 품목과 6개 장소만이 남게 되었다. 정부는 이로써 부가가치세 세부담 역진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특소세의 기능을 포기하였고 외부성의 교정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 특소세 체계는 <표 II-4>와 같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2) 교통세

교통세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휘발유와 경유 두 가지 유종을 대상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1994~2003)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1994년부터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등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SOC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2007년부터는 특소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2004년 1월 1일 현재 법정세율은 휘발유 630원/리터, 경유 276원/리터이고 탄력세율 30%가 적용되고 있다. 실행세율은 휘발유 572원/리터, 경유 261원/리터이다. 경유세율은 에너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404원으로 될 예정이다.

참고로 교통세(휘발유, 경유)와 특소세(LPG, LNG, 등유, 중유)로 구성되는 에너지세는 2000년 말에 대폭 개편되었다. 개편 이유는 에너지 소비절약, 유류간 세율격차에 따른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완화, 환경오염 감축 등이었다. 그 주된 내용은 휘발유, 가정용LPG(프로판), LNG는 2000년 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나

머지는 2006년 7월까지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즉 경유, 수송용 LPG(부탄)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는 경유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중유는 산업용 LNG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규과세하기로 하였다.

<표 II-5> 에너지세 개편

(단위 : 원/리터)

	휘발유	경 유	수송용LPG	등 유	중 유
2000.7	630	155	23	60	-
2001.7	"	185	67	82	3
2002.7	"	234	132	107	6
2003.7	"	276	189	131	9
2004.7	"	319	245	154	11
2005.7.	"	362	301	178	15
2006.7	"	460	411	231	20

자료 : 재정경제부, 「2000간추린 개정세법」, 2001.

3) 주세

주세는 1949년 법이 제정되어 알콜함량 1% 이상의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 주세의 과세체계는 1949년 주세법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로 출발하였으며, 1967년 말과 1971년 말의 두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을 거쳐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제품에 대해 종가세로 과세하는 과세체계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주세율은 대체로 알콜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형평성 기준이 더 작용해 고급주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양주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EU와의 주세협상

II. 소비세제의 현황 37

이 개시되면서 주세율 체계를 EU산 양주에 유리하게 바꾸라는 압력을 받았다. 즉 주세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EU식의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고 양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율체계하에서는 소주와 양주의 세율이 비슷하게 되는 등 우리 국민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EU의 주장 중 일부만 수용하여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소주 세율을 높였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남게 된 맥주세율을 인하하였다. 주세율 체계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6> 주세율 변화 추이

(단위 : %)

	1975.1.1.	1991.7.1.	1994.1.1.	1996.1.1	1997.1.1	2000.1.1	비고
탁주	10	5	5	5	5	5	
약주	60	30	30	30	30	30	
명약주	100	70	70	70	70	30	청주
청주	120	70	70	70	70	30	청주
합성청주	65	70	70	70	70	30	청주
맥주	150	150	150	150	130	100	
합성맥주	100						맥주
과실주	25	30	30	30	30	30	
기타양조주	110	80	80	80	80	72	일반증류주
증류식소주	35	50	50	50	50	72	
희석식소주	35	35	35	35	35	72	
고량주	110	80	80	80	80	72	일반증류주
위스키	200	150	120	100	100	72	
브랜디	150	150	120	100	100	72	
주정	49,350원	57,000원	57,000원	57,000원	57,000원	57,000원	
기타증류주	80	80	80	80	80	72	일반증류주
인삼주 1	110	50	50	50	50	72	리큐르
인삼주 2	50	50	50	50	50		
기타제조주1	100	80	80	80	80	72	일반증류주
기타제조주2	40	80	80	80	80	30	

주 :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주세율 70% 이하 주류는 10%(단, 주정, 탁주, 약주는 과세 제외)

4)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1985년부터 과세되기 시작한 담배판매세를 대체하여 1989년부터 과세되기 시작한 세목으로 현행 소비세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다.

흡연용 제조담배

- 킬런 20개비당 510원(200원 이하 40원)
- 파이프 담배 50g당 910원
- 엽킬런 50g당 2,600원
- 각련 50g당 910원

씹는 제조담배 50g당 1,040원

냄새맡는 제조담배 50g당 650원

3. 소비세 비중

가. 우리나라 전체 조세에서 소비세의 위치

우리나라 조세는 총 31개 세목(국세 14개, 지방세 17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OECD기준에 의하면 소비세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19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시).

조세(31개)

- 국세(14개)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II. 소비세제의 현황 39

- 간접세: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주세*), 유통세(인지세*, 증권거래세*)
- 관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17개)

- 도세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나. 우리나라 세목별 세수구성비

<표 II-7>에서 전체 「내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비슷하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간접세의 비중이 조금씩 커져 감을 볼 수 있다. 대부분 간접세인 교통세, 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국세」를 기준으로 보면 간접세의 비중은 이 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 소득세의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전체 내국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7> 내국세 세목별 구성 추이

(단위 : 10억원, %)

	1995		2000		2001		2002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44,382	100.0	71,106	100.0	74,027	100.0	82,228	100.0
직접세 계	23,428	52.8	36,913	51.9	36,760	49.7	39,262	47.7
-소득세	13,618	30.7	17,509	24.6	18,663	25.2	19,161	23.3
-법인세	8,663	19.5	17,878	25.1	16,975	22.9	19,243	23.4
-토초세	28	0.0	0	0.0	0	0.0	0	0.0
-상속증여세	1,029	2.3	989	1.4	948	1.3	856	1.0
간접세 계	20,124	45.3	32,353	46.5	36,081	47.4	40,610	49.4
-부가가치세	14,637	33	23,212	32.6	25,835	34.9	31,609	38.4
-특별소비세	2,617	6	2,985	4.2	3,634	4.9	4,288	5.2
-주세	1,825	4.1	1,962	2.8	2,488	3.3	2,655	3.2
-전화세	543	1	1,458	2.1	1,346	1.8	22	0.0
-증권거래세	502	1.1	2,736	3.8	1,798	2.4	2,036	2.5
인지세	320	0.7	388	0.5	477	0.6	482	0.6
과년도수입	511	1.2	1,452	2.0	1,710	2.3	1,874	2.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직·간접세 비율

우리나라의 세수는 전통적으로 직접세보다는 소비세를 위주로 하는 간접세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접세 비중이 감소하고 직접세의 비중이 점점 커져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수비중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아래 <표 II-8>에서 보듯이 국세, 지방세를 합한 「조세」에서 차지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8> 우리나라의 직·간접세 비율(조세 기준)

(단위: %)

구분	'9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직접세	49.5	53.8	53.8	54.7	52.9	50.5	55.3	49.5	51.2	50.4	50.6	48.7
간접세	50.5	46.2	46.2	45.3	47.1	49.5	44.7	50.5	48.8	49.6	49.4	51.3

주 : '03년은 예산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외국의 경우도 직·간접세 비율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 어떤 것이 더 나은 제도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으로 후진국은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선진국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들 사이에선 어떤 세율이 더 높은 것이 바람직한지는 알 수가 없다.

<표 II-9> 외국의 직·간접세 비율(국세기준) (단위 : %)

구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직접세	58.4	98.3	57.1	47.4	43.3	52.1
간접세	41.6	6.7	42.9	52.6	56.7	47.9

주 : 2000년 기준.
 미국은 지방세가 대부분 간접세임.
 자료 : 일본 대장성, 『재정금융통계월보』, 2002.4.

라. 소비세 비중의 국제비교

대체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EU의 경우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비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단계의 초기에 있어 소득과세의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후자는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확보와 EU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소비세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

<표 II-10> OECD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캐나다	40.5	31.7	32.0	32.6	31.8	25.8	25.4	24.4	24.7
멕시코				51.2	64.8	55.3	53.9	53.1	51.5
미국	22.8	20.0	19.5	17.6	18.8	17.3	17.9	15.8	16.1
호주	34.7	32.0	29.3	31.1	32.8	27.8	29.0	27.5	29.1
일본	26.2	22.4	17.3	16.3	14.0	13.2	15.2	18.5	19.0
한국			61.1	62.7	59.5	48.3	43.1	38.3	39.6
뉴질랜드	27.9	27.2	24.2	22.3	23.1	33.6	33.3	34.5	35.5
오스트리아	37.4	37.4	34.5	31.5	32.6	31.5	27.7	28.4	27.1
벨기에	37.2	36.5	27.4	27.2	25.3	25.4	25.7	25.4	24.6
체코							32.9	32.0	30.5
덴마크	40.6	38.8	33.6	37.4	34.2	33.5	32.2	32.4	32.2
핀란드	42.5	39.6	32.4	35.7	33.9	32.6	29.9	29.1	29.4
프랑스	38.4	38.1	33.3	30.4	29.7	28.4	27.4	25.8	25.2
독일	33.0	31.8	26.9	27.1	25.7	26.7	28.0	28.1	28.8
그리스	48.8	48.2	46.8	41.2	42.7	44.5	41.3	38.7	37.9
헝가리							40.6	40.5	38.7
아이슬란드	62.7	61.3	63.0	59.9	61.1	51.5	48.8	44.8	41.5
아일랜드	52.6	52.4	46.5	43.7	44.4	42.3	40.7	37.2	37.3
이탈리아	39.5	38.7	29.4	26.5	25.4	28.0	27.3	28.4	25.6
룩셈부르크	24.7	20.5	20.9	21.5	24.3	24.8	26.6	27.6	26.6
노르웨이	41.2	42.8	37.7	35.4	37.6	35.6	38.6	34.4	31.3
폴란드							35.2	36.3	35.8
포르투갈	44.2	44.6	40.7	44.9	42.8	43.8	43.5	39.9	40.0
슬로바키아								35.9	33.2
스페인	40.8	35.9	24.2	20.7	28.7	28.4	28.6	30.2	29.3
스웨덴	31.2	28.2	24.3	24.0	26.6	25.0	27.8	24.0	25.1
스위스	30.5	26.9	20.0	20.5	21.9	21.2	21.9	22.5	23.2
터키	53.9	49.4	41.3	25.6	36.0	27.9	37.6	40.7	38.7
영국	33.1	28.8	25.0	29.2	31.5	30.5	35.4	32.2	31.3
OECD평균	38.0	35.9	32.6	32.4	33.7	31.9	32.5	31.8	31.3
OECD유럽	40.1	38.3	33.3	32.0	33.2	32.1	33.0	32.3	31.5

II. 소비세계의 현황 43

<표 II-11>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비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캐나다	10.4	9.8	10.2	10.1	10.3	9.3	9.0	8.7	8.7
멕시코				8.3	11.0	9.8	9.0	9.8	9.7
미국	5.6	5.5	5.3	4.8	4.9	4.6	4.9	4.7	4.6
호주	7.5	7.1	7.8	8.5	9.6	8.1	8.6	8.7	8.7
일본	4.82	4.5	3.7	4.1	3.8	4.0	4.2	5.1	5.2
한국			9.3	11.1	10.1	9.2	8.8	10.0	10.8
뉴질랜드	6.9	7.2	7.2	7.1	7.5	12.6	12.3	11.7	12.0
오스트리아	12.7	12.9	12.9	12.6	13.6	12.7	11.5	12.3	12.3
벨기에	11.6	12.6	11.0	11.6	11.6	11.4	11.5	11.6	11.3
체코							13.2	12.5	11.7
덴마크	12.1	15.2	13.5	16.4	16.2	15.8	15.9	16.0	16.0
핀란드	12.9	12.6	11.9	12.9	13.5	14.6	13.5	13.8	13.6
프랑스	13.2	13.0	11.9	12.4	13.0	12.2	12.2	11.7	11.3
독일	10.4	9.5	8.8	9.4	8.8	8.8	10.7	10.6	10.6
그리스	9.7	10.8	10.2	10.0	12.2	13.1	13.4	13.8	14.0
헝가리							17.2	15.8	15.1
아이슬란드	16.4	16.6	18.7	17.8	17.4	16.2	15.5	17.2	15.2
아일랜드	13.1	15.1	13.5	13.7	15.6	14.2	13.4	11.6	11.2
이탈리아	10.1	10.1	7.7	8.1	8.7	10.9	11.2	11.9	10.8
룩셈부르크	6.9	5.5	7.8	8.8	11.0	10.1	11.3	11.2	10.8
노르웨이	12.2	14.7	14.8	15.0	16.2	14.8	15.9	13.4	13.6
폴란드							14.0	12.5	12.0
포르투갈	7.0	8.6	8.5	10.8	11.4	12.8	14.1	13.7	13.4
슬로바키아								11.7	10.7
스페인	6.0	5.8	4.6	4.8	8.0	9.4	9.4	10.6	10.3
스웨덴	10.9	10.6	10.0	11.1	12.5	13.0	13.5	13.0	12.9
스위스	6.0	6.1	5.6	5.9	5.8	5.7	6.2	7.0	7.1
터키	5.7	6.2	6.6	4.6	5.6	5.6	8.5	13.6	14.1
영국	10.1	10.7	8.8	10.3	11.9	11.2	12.3	12.0	11.7
OCED평균	9.7	10.0	9.6	10.0	10.8	10.8	11.5	11.6	11.4
OECD유럽	10.3	10.9	10.4	10.9	11.8	11.8	12.5	12.6	12.3

<표 II-10>과 <표 II-11>은 각각 소비세의 총조세와 GDP 대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에는 60%가 넘었으나 그후 차차 하락해 오다가 2001년 현재 3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평균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OECD 내의 후진국(뉴질랜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멕시코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GDP 대비 소비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일관되게 1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것은 OECD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비세 비중은 10.8%로서 이것도 OECD평균(11.4%)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Ⅲ.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혁의 비판적 고찰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도입한 1977년의 대폭적인 소비세제 간소화를 제외하고는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대변화는 없었다. 대부분이 기존의 세제 내에서 세율이나 감면의 조정 등이 있어 왔을 뿐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1977년의 소비세제 개혁과 소비세제 개편 중에서 의미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편, 에너지세 개편, 2004년 특소세 개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1977년 소비세제 간소화

1977년 소비세제 개혁의 주요 목표는 소비세체계의 간소화와 더불어 세수증대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앞의 제Ⅱ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전의 일반소비세인 영업세와 개별소비세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의 복잡한 세목 체계를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로 간소화한 것이다.

먼저 간소화 목표는 영업세가 단일세율 부가가치세로 개편되고 기타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를 주축으로 통합·단순화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일반소비세의 경우 영업세는 과세대상 업종간 거래에 대해 중복과세되는 문제와 수출품의 경우 영업세의 완전면세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경우 성격상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세목이면서도 다른 세목으

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소비세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수증대 목표의 달성은 불분명하다. 아래 <표 III-1>에서 보듯이 1977년을 기점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영업세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1977년 이전에 총국세 중 영업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였으나 1978년 이후로는 20%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수는 197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일반소비세와 개별세수를 합한 전체 소비세수는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세수 비중의 감소는 그후로도 계속되었다 (<표 II-9> 참조).

<표 III-1> 소비세수의 추이

(단위: 억원, %)

	국 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일반소비세 합계	물품세	특소세	개별소비세 합계
1974	9,137	970		970(10.6)	794		2,867 (31.4)
1975	13,910	1,982		1,981 (14.3)	1,176		3,705 (26.6)
1976	20,927	2,614		2,614 (12.5)	1,664		5,082 (24.3)
1977	26,227	2,079	2,416	4,495 (17.1)	1,320	999	5,597 (21.3)
1978	36,523		8,351	8,352 (22.9)		3,270	5,439 (14.9)
1979	47,617		10,878	10,878 (22.9)		4,846	7,814 (16.4)
1980	58,077		14,708	14,708 (25.3)		5,825	9,302 (16.0)

자료 : 국세청

주 : 1. ()안은 국세 대비 비율.

2. 물품세와 특소세는 개별소비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임.

2.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편

부가가치세제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해 과세특례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과세특례제도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기는 하나 기장을 면제해줌으로써 과세근거를 없애 탈세의 요인이 되었고, 이것이 사업소득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수평적 불공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과세특례 기준을 기준으로 수혜자과 비수혜자간에 과세부담의 지나친 불공평성이 초래되어 또 다른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과세특례제도 기준 차상위 계층의 불만을 완화하고 탈세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개편해 왔다.

<표 III-2>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개편 추이

	과세특례제도			
	소액부징수	과세특례자	한계세액공제	간이과세자
1977	납부세액 7,500원 미만	연간매출액 1,200만원 미만, 매출액×2%		
1978	납부세액 1만원 미만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 매출액×2%		
1988	납부세액 2만원 미만	연간매출액 3,600만원 미만, 매출액×2%		
1989	납부세액 4만원 미만	"		
1993	1과세기간 매출액 300만원 미만	연간매출액 3,600만원 미만, 매출액×2%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1994	1과세기간 매출액 600만원 미만	"	"	
1995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2%	폐지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1999	납부면제제도로 용어 수정, 연간매출액 1,200만원 미만	폐지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표 III-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인원 및 과세표준 추이

(단위 : 명, 억원)

	인 원				과세표준			
	신고인원 총계	간이과세	특례	납부면제	과세표준 총계	간이과세	특례	납부 면제
1993	2,253,105	-	1,107,798 (49.2)	249,079 (11.1)	5,778,181	-	120,248 (2.1)	
1994	2,388,044	-	891,395 (37.3)	429,403 (18.0)	6,903,037	-	127,772 (1.9)	
1995	2,526,198	-	404,862 (16.0)	867,746 (34.3)	8,383,692	-	130,401 (1.6)	
1996	2,589,113	273,197 (10.6)	179,486 (6.9)	1,031,077 (39.8)	9,606,041	53,382 (0.6)	149,373 (1.6)	
1997	2,930,116	490,034 (16.7)	162,016 (5.5)	1,080,881 (36.9)	10,859,827	132,579 (1.2)	18,942 (1.7)	
1998	2,585,369	546,161 (21.1)	105,561 (4.1)	1,027,177 (39.7)	10,569,437	125,864 (1.2)	135,789 (1.3)	
1999	2,998,956	586,800 (19.6)	115,403 (3.8)	1,120,573 (37.4)	11,717,850	158,356 (1.4)	139,004 (1.2)	
2000	3,390,772	1,669,128 (49.2)	-	?	13,856,522	211,875 (1.5)	74,553 (0.5)	
2001	3,709,035	1,814,614 (48.9)	-	?	15,153,891	266,125 (1.8)	-	
2002	3,963,454	1,843,894 (46.5)	-	?	17,255,021	271,102 (1.6)	-	

주 : 1. 2000년 이후 간이과세자수는 납부면제를 포함한 것임.

2. ()안의 수치는 총계 대비 비율.

1995년 한계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전체 과세특례자수를 50%대에서 60%대로 증가시킨 반면에 1999년 과세특례자 폐지는 전체 과세특례자수의 비율을 60%대에서 40%대로 감소시켰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과세특례자 폐지는 1995년의 한계세액공제제도 도입과 달리 부가가치세 탈세의 요인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99년 이후 전체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과세특례제도에 해당하는 과표

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탈세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9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는 부가가치세의 탈세 요인을 줄여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수평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간이과세제도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탈세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에너지세 개편

우리나라의 에너지세는 교통세(휘발유, 경유)와 특소세(LPG, LNG, 등유, 중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유류의 가격 격차는 생산원가보다는 부과되는 에너지세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는 환경오염 수준 같은 확실한 기준보다는 유류의 사용계층에 대한 고려와 같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큰 폭의 차이로 과세되어 왔기에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환경오염을 증가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0년 6월 현재 휘발유보다 환경오염의 정도가 더 큰 경유가 리터당 155원인 반면에 휘발유는 630원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0년 말에 이러한 에너지세를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세 개편은 기존의 유류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결정을 하였던 소비자(경유자동차)와 사업자(LPG택시) 등에게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앞의 <표 II-5>에 있는 것처럼 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세 개편은 많은 저항을 불러와서 정부는 여러 가지 경과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대부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하기로 하였다. 버

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유가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는가 하면,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해서 LPG할인가입카드를 발급해 주어 현행가격으로 구입토록 하였다. 그리고 중산·서민층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불입액 소득공제, 자동차보유세 경감 등의 조치를 취했고,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화세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4. 2004년 특별소비세제 개편

2004년 8월 특별소비세 개편은 대상 품목 32개 중 24개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개편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특소세 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차제에 특소세를 형평성 증진 목적보다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의 치유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이러한 이유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특소세는 1977년 8종에 이르던 복잡한 소비세제도를 통합하여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주로 고급가전제품, 에어컨, 골프용품, 보석류와 같은 사치품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복수의 세율을 사용하여 사치품에 대해 좀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재분배 목적 외에 승용차와 유류와 같이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제품에 대해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그동안 특소세는 여러 차례 개편 과정을 거쳐왔다. 주된 이유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와 같이 필수품화된 품목에 대해 더

Ⅲ.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혁의 비판적 고찰 51

이상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이번과 같이 소비진작을 위해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1977년 도입당시 63개 품목 6개 장소에 이르던 특소세 과세대상이 이번 개편 직전까지 32개 품목 6개 장소로 줄어들었고 세율도 최고 100%에 이르던 것이 14%까지 인하되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그동안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특소세율을 내릴 때마다 장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도 없이 세수만 줄이고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을 익히 알기에 정부도 특소세 폐지 24개 품목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프로잭션 TV나 에어컨처럼 세수는 적으면서 과도한 행정비용과 관련 기업의 부담만 초래하거나 또는 보석이나 고급모피처럼 세수는 적으면서 밀수나 무자료 거래를 성행시켜 정상적 영업을 하는 업체에게 불공평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선정된 24개 품목으로부터의 세수는 2003년의 경우 4천억원 정도로 전체 특소세 세수 4.8조원의 8%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고급 TV, 요트, 고급모피 등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데 대해 일반서민들은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특소세 폐지를 단행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부양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적은 세수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특소세제도를 더욱 단순화하여 효율성에 더 치중을 하고 차제에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경기부양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특소세의 소비진작 효과에 관해 살펴보면 특소세 인하는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반짝효과뿐이다. 따라

서 그것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나치게 진보적 개혁 위주의 국정운영에서 경제활성화 내지 경제성장 중심에로의 정부의 국정운영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소세 폐지가 소비세제의 효율성 증대에 분명히 기여하겠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에 중산서민층을 위한 정부지출 증대와 재산과세의 강화 등을 통해 특소세의 용도 전환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외국의 소비세제 개혁 사례

1. 부가가치세 개혁

유럽 국가들이 1967년부터 1973년 사이에 기존의 개별 판매세(selective sales tax)와 구매세(purchase tax)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한 것은 소득세제 단순화와 더불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세제개혁의 하나였다. 이 당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자원배분에 있어 중립적이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 세가 모든 상품에 단일세율로 부과되면 용역을 포함한 모든 상품 간에 중립적이다. 그리고 수직적 통합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중립적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중간재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상호대사가 가능하기에 탈세가 어렵다. 다섯째, EU통합 과정에서 조세제도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

EU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도 앞다투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도입 초기 OECD국가들의 VAT세율은 다수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표준세율을 중심으로 필수품 등에는 저세율을, 사치품 등에는 고세율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율을 적용

하였다.

도입 초기인 1970년대 OECD 24개국의 표준세율 평균은 12.4%이었으나 그후 계속 상승하여 2000년 기준 표준세율은 17.2%에 이른다.

<표 IV-1> OECD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

(단위: %)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도입초기 표준세율	표준세율 (2000년)	경감세율
오스트리아	1973	16	20	10/12
벨기에	1971	18	21	0/6/12
캐나다	1991	7	7/15	0
덴마크	1967	10	25	-
핀란드	1969	11.1	22	8/17
프랑스	1964	20	20.6	2.2/5.5
독일	1968	10	16	7
그리스	1987	16	18	4/8
아이슬란드	1989	22	24.5	14
아일랜드	1972	16.4	21	0/3.3/10/12.5
이탈리아	1973	12	20	4/10
일본	1989	3	5	-
룩셈부르크	1970	8	15	3/6/12
멕시코	1960	10	15	0/10
네델란드	1969	12	17.5	6
뉴질랜드	1986	10	12.5	-
노르웨이	1970	20	23	0
포르투갈	1986	16	17	5/12
스페인	1986	12	16	4/7
스웨덴	1969	11.1	25	0/6/12
스위스	1995	6.5	7.5	2.3/3.5
터키	1985	10	17	1/8
영국	1973	10	17.5	0/5
한국	1977	10	10	-
평 균		12.4	17.2	

자료 : 정재호(2002) <표 1>, <표 2>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5, 2001.

IV. 외국의 소비세제 개혁 사례 55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이외에 모든 OECD국가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면제하여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도 OECD국가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차등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음식, 농업, 문화서비스, 장애인용 기구, 스포츠, 신문, 서적 등에 대해 영세율 혹은 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사치품에 대해 고세율을 별도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고세율은 폐지하였다. 고세율을 폐지한 데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표 IV-2> OECD국가의 표준면세 범위

구분	면세 대상
OECD표준면세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 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의 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인 활동, 자선사업 등

OECD국가에 있어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부가가치세 수입이 GDP 대비 혹은 총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들이 국제경쟁력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및 자본과세 비중을 계속 낮추어 왔기 때문이다.

<표 IV-3> OECD국가(평균)의 부가가치세 세수입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총세수 대비	11.9	13.5	13.3	14.2	15.8	17.5	17.7	18.5	18.5
GDP 대비	3.3	4.1	4.3	4.7	5.4	6.1	6.4	6.9	6.9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2*, Tables 28 & 29, 2003.

OECD국가의 소비세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OECD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수입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개별소비세의 세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소매거래에 부과되는 세제(retail and wholesale taxes)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되고 부가가치세율이 점차 증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IV-4> OECD국가(평균)의 개별소비세 세수입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총세수 대비	24.1	20.4	17.5	16.6	16.1	12.9	13.1	11.8	11.3
GDP 대비	5.8	5.4	4.8	4.8	4.9	4.2	4.5	4.2	4.0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2*, Tables 30 & 31, 2003.

2. 일본의 소비세 개혁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부채(GDP 대비 150%)와 재정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가가치세율(5%)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시모토 내각이 소비세율을 서둘러서 3%에서 5%로 인상했던 조치가 그동안의 경제불황을 초래한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선불리 소비세율을 인상하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상황과 이미 높은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세의 세율인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두 자리 수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제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세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一河 秀洋(2002) 참조).

첫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정해야 한다. 특례조치는 중소기업자의 사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탈세와 소비세제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먼저 연매출액 3,000만엔 미만의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사업자 면세점 제도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 현재 면세사업자의 비율은 60%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매출액 2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세액 규모를 장부방식에 따르지 않고 '추정 매입률'을 적용하는 간이과세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탈세에 이용되고 소비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invoice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총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얻은 금액에서 원재료 등을 다른 기업에서 매입할 때 송부된 일정서식의 invoice에 기재된 납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면 된다. 이 같은 과세방식은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줄이고 탈세를 줄이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셋째, 두 자리수 세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등 세율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두 자리수 단일세율은 역진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식료품, 필수품 등에 경감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V. 바람직한 소비세제의 개편방향

1. 소비세제의 간소화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도는 1977년 소비세제 개혁에 의해 대폭 간소화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다. 그 이유는 첫째 불필요하게 세목이 많고 둘째, 목적세가 남용되고 셋째, 부가세(surtax) 방식의 과세체계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세제가 복잡하게 된 이유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효성 없는 세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석유류에 과세되는 교통세는 불필요하게 특별소비세와 이원화되어 있어 세제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국세의 20%에 달하는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 목적세는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재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교육세를 폐지하여 본세에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조세체계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심지어는 조세감면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를 운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과세구조이다. 예를 들면 승용자동차 구입시 본세 4가지(특소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에 부가세(교육세, 농특세, 교육세) 3가지가 덧붙여져 총 7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토지 취득시에는 본세 2가지(취득세, 등록세)

에 부가세 2가지(농특세, 교육세) 추가되어 총 4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세를 폐지하여 본세에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

2. 소비세 세율체계의 개편

세율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이슈는 단일세율이 바람직한가의 여부와 만약에 다수세율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율을 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단일세율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최적간접세 이론에서 이미 결론이 난 이슈이다. 여가에 과세가 가능하고 최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전제하에서도 간접세 단일세율이 최적(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이기 위한 조건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모든 소비자가 동질적인 경제에서 단일세율이 효율적 조세이기 위한 조건은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노동과 재화들간에 유사분리가능(quasi separable)한 효용함수이어야 하고,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 단일세율이 최적조세이기 위한 조건은 모든 소비자들의 선호가 여가와 재화들간에 약분리가능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선형 앵겔곡선을 가져야 한다(나성린(1997)). 현실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서 단일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 또한 근거가 약하다. 이 주장의 핵심은 재화들간에 차별적인 조세를 부과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모든 재화가 동질적일 경우에는 이 주장이 옳지만 재화들이 이질적일 때는 이 주장이 반드시 옳지 않다.

따라서 최적조세의 관점에서 혹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단일세율 소비세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취약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

에서의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경감세율 또는 고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필수품의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사치품의 경우 고세율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품의 특성(예: 수요의 가격탄력성, 필수품·사치품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부가가치세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개혁을 위해 단일세율 논쟁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 부가가치세율 10%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다양한 소비세제를 운용하고 있고 전체 소비세율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 않으므로 소비세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의 증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의 다른 주요세목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의 문제는 부가가치세율의 증가는 소비를 둔화시켜 경기를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고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시기는 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로 할 필요가 있고, 세부담 역진성 문제는 경제활성화로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만약에 다른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다른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상품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서민층이 선호하는 상품에는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을 고려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에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사치품의 경우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낮은 세율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최적조세모형을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세율의 적용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세목들의 조정은 현재로서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 다만 앞으로도 특별소비세는 당분간 외부성의 교정세와 사치품에 대한 고율과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세율의 적용은 개별소비세 이외에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나 면세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 세율의 채택 여부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 세율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탈세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개편: 부가가치세의 개편

현재 소비세 관련 탈세는 거의 대부분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탈세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가가치세제도에서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세특례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특례제도는 영세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장이나 세금계산서 수취보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도 이러한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향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실제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기 때문에 탈세가 발생하

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세사업자들에 한해서만 현행 납세면제제도 (구 소액부징수제도)를 허용하고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자로 구분되었던 과세특례제도가 1999년부터 간이과세제도로 단순화되었는데 앞으로 이 간이과세제도마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비세제 현황과 소비세제 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사점을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세 개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세의 세계적인 추세는 1960년대 이후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오다 1980년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개혁 기간동안 소득세 비중이 감소하면서 소비세 비중이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소비세 비중이 조금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소비세 비중이 OECD국가의 경우 대체로 30% 초반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소비세 체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아가는 반면에 개별소비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후자는 소비세제를 단순화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소비세 비중이 점점 낮아져 오고는 있지만 대체로 30%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30%대 초반을 유지하는 선진국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이고 40~50%대의 후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소득수준을 볼 때 대체로 적절한 수준처럼 보인다.

소비세 체계 내에서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실익이 없는 단일세율의 적정성 문제와 관계없이 소비세제의 간소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비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부가가치세 중심의 소비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비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재 교통세와 각종 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는 환경관련 조세를 환경세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에너지관련세와 더불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와 삶의 질 개선, 국가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수 증대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소득세 증대의 어려움, 재산세 증대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다른 나라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세부담 역진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영세율 제도, 특별소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나성린, 「단일세율 품목세를 위한 일반적인 선호 구조」, 『공공경제』, 제 2권, 1997.
- 재정경제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간추린 개정세법 (‘76~2002 부가가치세법관련)』, 2003.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 성명재, 「소비세」,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 1권, 8장,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정재호,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 9.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정책 50년』, I권~VI권, 1997.
- 一河 秀洋, 「소비세 개혁방향」, 번역자료, 『일본의 세제개혁 본연의 자세』, 한국조세연구원, 2002.10
- Boskin, M.(ed.), *Frontiers of Tax Reform*, Hoover Press, 1996.
- Boskin, M. & C. McLure, Jr.(ed.), *World Tax Reform: Case Studie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CS Press, 1990.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2*, 2003.

<국문요약>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나 성 린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을 소비세 체계, 세율 및 그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동안 단행되어 온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외국의 소비세제 개혁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비세제 개혁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소비세제 개편은 당분간 부가가치세 중심의 소비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비세 체계를 간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 질의 개선을 위해 현재 교통세와 각종 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는 환경 관련 조세를 환경세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에너지관련세와 더불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와 삶의 질 개선, 국가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수증대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소득세 증대의 어려움, 재산세 증대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다른 나라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uture Direction for Consumption Tax Reform

Seong-Lin Na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reform of consumption tax in Korea. For this, we survey and analyze the past consumption tax reforms both in Korea an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We also look at the theoretical arguments for the desirable consumption tax system.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It would be desirable that Korea for the time being should maintain the current consumption tax system centering around the Value Added Tax and better focus on simplification of consumption tax system. And we also advise to unify various environment-related taxes such as transportation tax and other levies into one environmental tax. Finally, Korean government may consider to increase the tax rate of VAT considering the need to raise tax revenue in order to fund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national debt repayment. This is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ther revenue sources due to expected tax revolts.

<著者略歷>

나성린

서울대학교 철학사(1976)
서울대학교 경제학사(1981)
영국 에섹스(Essex)대 경제학 석사(1984)
영국 옥스퍼드(Oxford)대 경제학 박사(1988)
영국 웨일즈(Wales)대 경제학과 연구조교수(1986~1988)
영국 에섹스(Essex)대 경제학과 조교수(1988~1989)
미국 워싱턴(Washington)대 경제학과 초빙부교수(1992~1993)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1989~1996)
세계은행(World Bank) consultant(1999~2000)
Asia Pacific Development Center, Lead Expert(1992. 3~1994. 12)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1992. 9~1993. 8, 2005. 1. 1~현재)
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소득세제분과위원장(1995~현재)
기획예산처 예산자문위원(1998~현재)
보건복지부 자문위원(1998~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2000~2003)
국무총리실 자영자소득과악위원회 실무기획단장(1997~1998)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1995~1999)
파이낸셜뉴스 객원논설위원(2000~2003)
기독교방송국 객원해설위원(2000~현재)
중앙일보 고정칼럼니스트(2004. 1. 1~2004. 6. 30)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2005. 1. 1~현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2004)

<논문>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under Uncertainty,”
Oxford Economic Papers 50, 1998 (with H.S. Shin).
“Market Imperfections and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Some Results from Aggregate UK Data,” Oxford

Economic Papers 47, 1995 (with C.J. Green).
“The Possibility of Pareto-improving Transition in Optimal
Tax Theory,”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Vol. 3, No.
2. 1998. 외 50여편

<저서>

*Restructuring of Income Support System and Generative
Welfare in Korea*, World Bank, 2000 (with K.B. Chung).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1.
『공공정책 형성에서 게임이론의 기여』, 한국조세연구원, 2001.
『빈곤론』, 나남, 1995.
『조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분석: Tax-benefit 모형을 중심으
로』, 한국조세연구원, 1993 (공저:현진권)의 15권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안

2005년 12월 15일인쇄
2005년 12월 22일발행

저 자 나성린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17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의 2005

ISBN 89-8101-200-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4,000원